

---

# 2017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

---

2017. 9.



## 목 차

1. 연휴 응급진료체계 개요 .....	1
2.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.....	2
3. 홍보방안 .....	4
4. 추진일정 .....	4
붙임1. 기관별 세부 추진일정 .....	5
붙임2.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.....	6
붙임3.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·운영지침 ·	14

## ① 연휴 응급진료체계 개요

### □ 목적

-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 가동
-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·운영을 통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공백 방지 등 국민 건강보호 및 불편 최소화

□ 적용기간 : '17. 9. 30. (토) ~ 10. 9. (월) (10일간)

### □ 관련기관

- 보건복지부,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, 공공보건의료기관, 응급의료기관, 응급의료시설,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

### □ 관련규정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9조(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)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(비상진료체계)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(당직의료기관의 지정)

## ②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

### □ 연휴 응급진료기관\*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·운영

\* **응급진료기관** :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, 응급의료시설, 종합병원, 당직의료기관

#### ○ 응급의료기관, 응급의료시설, 종합병원 응급실

- 명절 연휴기간 중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

#### ○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·의원과 약국

- 관련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받아 **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·운영**

< 당직의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지정 기준 및 연휴 응급진료 내용 >

기 관	지정 기준	연휴 응급진료 내용
응급의료기관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에 따라 기 지정 및 운영 * 응급의료기관 414개소('17.7월말 기준)	· 24시간 응급실 운영 · 필요시 외래 진료 운영
응급의료시설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 에 따라 기 지정 및 운영	· 24시간 응급실 운영 · 필요시 외래 진료 운영
종합병원 응급실	○ 「의료법」 제33조, 제36조에 따라 기 지정 및 운영	· 24시간 응급실 운영 · 필요시 외래 진료 운영
당직의료기관	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지정 및 운영 - 응급의료기관, 응급의료시설,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및 의원 · 특별시·광역시 : 인구 20만명당 3개 계열별 각 1개소 · 도 지역 : 인구 10만명당 3개 계열별 각 1개소 * 지정 개소수가 적은 지역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인접 시군구와 연계하여 명절연휴 중 의료 취약지역 보완	· 신청한 날짜와 시간 동안 외래진료 운영
휴일지킴이약국	· 인구 2만명 당 1개소 지정	· 신청한 날짜와 시간 동안 약국 운영
보건소 등	·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기 지정 및 운영	· 주간 진료 실시 및 야간 당직근무체계 유지

\* 3개 계열은 내과계, 소아과계, 외과계임

□ 응급진료상황실(중앙, 지역)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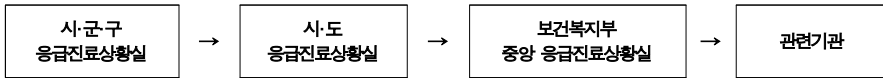
○ 중앙 응급진료상황실

- (설치) 보건복지부(응급의료과)
- (운영) 공공보건정책관 총괄, 연휴기간 동안 1일 1명씩 교대 근무
  - \* 09:00~18:00 응급의료과내 근무, 18시 이후부터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- (역할) 응급진료체계 운영 현황 파악 및 조치, 대량 환자 발생 시 조치, 시·도 응급진료실적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운영상황\* 보고
  - \*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실적 및 운영 현황 등

○ 지역 응급진료상황실

- (설치)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
- (역할) 연휴 응급진료대책 수립,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현황 점검(유선 또는 방문), 시·도 및 보건복지부로 상황 보고
  - \* 연휴기간 내 각 시·도 근무자는 매일 16:30까지 '응급의료정보시스템'에 상황 입력 후 보건복지부 유선 보고

< 보고체계(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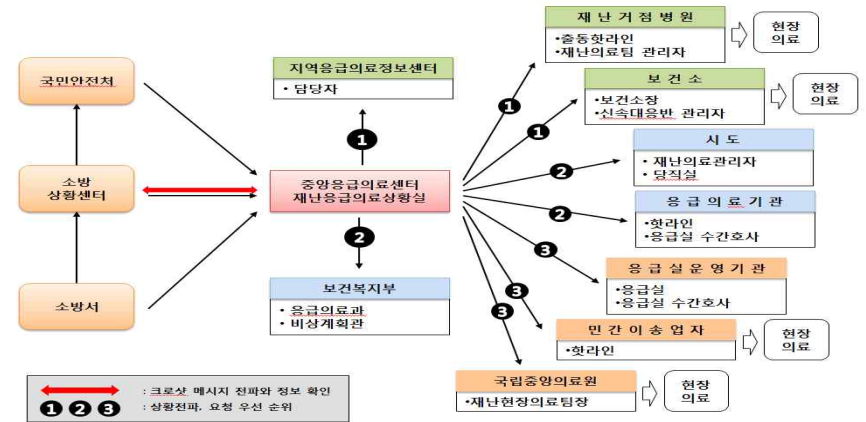


□ 대량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

- (목적)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
- (시도 및 시군구) 대량환자 발생 즉시 중앙 응급진료상황실(보건복지부) 보고,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강화 및 여유병상 확보, 필요시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

- (보건복지부) 대량환자 발생 규모와 상황 파악, 필요시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 및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등

<대량환자 발생 시 상황전파도>



3 홍보방안

- (유선)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실시
  - 129 보건복지콜센터, 119 구급상황관리센터, 120 시도 콜센터
- (인터넷) 홈페이지, 스마트폰 앱, 포털사이트 안내
  - 홈페이지 : 보건복지부,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, 응급의료정보센터([www.e-gen.or.kr](http://www.e-gen.or.kr))
  - 스마트폰 앱 : 응급의료정보제공
  - 포털사이트 : 네이버, 다음 '명절 병원', '명절 진료' 등 검색
- (오프라인) 인근 당직의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이용 안내문 부착

#### 4 추진일정

- 추석 연휴 응급진료 계획 수립·통보 : '17.8.25.(금)
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현황 취합 및 관련 기관 통보  
(1차 '17.9.18, 2차 9.25)
- 연휴 응급진료 일일 상황보고 ('17.9.30. ~ 10.9.)
- 상황실 운영 결과 최종 보고 ('17.10.12)

#### 【붙임1】

### 기관별 세부 추진 일정

기 관		내 용	제출 일시
보건복지부	⇒ 사·도, 중앙 응급의료센터	1. 설 연휴 응급진료 계획 수립·통보	2017. 8. 25.(금)
	⇒ 구급상황관리 센터 (119)	2.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현황 통보	2017. 9. 25.(월)
	⇒ 보건복지콜센터 (129)	3.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현황 통보	2017. 9. 25.(월)
	⇒ 청와대, 국무 총리실 등	4. 비상진료 일일 상황보고	연휴 당일 18:00
	⇒ 내부보고	5.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결과 최종보고	2017. 10. 12.(목)
중앙응급의료 센터	⇒ 보건복지부	1. 연휴 응급진료계획 제출 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정보 입력 및 안내시스템 구축(홈페이지,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)	~ 2017. 8. 31.(목)
	⇒ 시·도	2.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(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자)	2017. 9. 1.(금) ~ 9. 13.(수)
시·도	⇒ 보건복지부	1. 연휴기간 시·도별 응급진료계획 제출 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현황 1차 입력 완료 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운영판 입력 마감	2017. 9. 4.(월) 2017. 9. 18.(월) 2017. 9. 25.(월)
		2.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기관·약국 운영실적 (유선 보고 병행)	연휴 당일 16:30
		3. 응급진료기관 점검 결과 제출	2017. 10. 12.(목)

【붙임2】

기관별 세부 추진 사항

(1) 보건복지부

-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달
- 의사회·약사회 등 관련 단체 협조 요청 등
- 보건복지콜센터(129)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(119) 협조 요청
  - 연휴기간 동안 지정된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요청
- 우리부 홈페이지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명단 게시
- 중앙 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 및 보고
  - 운영기간 : 2017. 9. 30. ~ 10. 9. (09:00~18:00)
    - ※ 18시 이후부터는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  - 연휴 응급진료 상황 총괄
    - 시·도의 응급진료실적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운영상황 보고(당일 18:00 까지)
  - 주요 사건·사고 등 인명피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

(2) 중앙응급의료센터

-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실시
- 시도 응급진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정보 입력 및 안내시스템 구축 지원
  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명단 등 시스템 입력 교육 실시

- (대상)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자
- (일정) 2017. 9. 1. ~ 9. 13.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- (내용) 응급의료정보시스템(인트라넷)에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명단 및 시·도 상황근무자 명단 입력 방법 교육
  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안내시스템 구축(대국민용)
    - 홈페이지(www.e-gen.or.kr)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

명절 연휴기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지원반 운영

- 운영기간 : 2017. 9. 30. ~ 10. 9.(09:00~18:00)
-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비상 복구 및 지원반 운영

(3) 시도

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·시행

- 시·도는 자체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군·구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,
  - 보건복지부에도 2017.9.4.(월)까지 동 계획을 보고
-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인력, 구급차 동원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하도록 조치
  - 대규모 환자발생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즉각 대처, 상황 및 주요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 상황실로 통보
- 관내 시·군·구의 응급진료계획 점검 및 조정
- 시·군·구로부터 취합된 연휴기간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운영 명단 및 시·도 상황근무자 명단을 2017.9.18.(월)까지 「통합

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」(이하 '시스템')에 입력

- 수정사항 발생시 2017.9.25.(월)까지 입력 마감
- 시·도 담당자 :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·등록
- ※ 별지 1, 1-1, 1-2호 서식 참조
- ※ 시스템 문의 : 중앙응급의료센터(02-6362-3434 또는 3446)

-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실적을 당일 16:30까지 시스템으로 일지 제출(별지 제2호 서식 참조)

#### □ 연휴 응급진료 관련기관 사전 협의

- 보건소장, 응급의료기관장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휴기간 응급진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-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에 입력담당 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협조
- ※ 교육 일정 : 9.1 ~ 9.13

#### □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및 통보

- 각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수립한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의 적정여부 검토
- 시·군·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추가 지정
- 시·도지사는 추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에 대한 직접통보가 어려울 경우 각 보건소가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
- ※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·운영지침(붙임3) 참고
-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은 9.28.(목)까지 시·도 홈페이지 게재

- 시·군·구에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임의로 명단에 포함시킨 후,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- ※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·군·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해당 시·군·구는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응급진료기관·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이 수정 되도록 조치

#### □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

- 운영기간 : 2017. 9. 30.(토) ~ 10. 9.(월), 09:00~18:00
- ※ 18시 이후부터는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
#### □ 상황실 근무 및 진료체계 점검 실시

- 각 보건소 상황실 근무 점검
- 상황실 근무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
-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여부 점검

#### □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점검에 대한 조치

- 점검 시 불이행으로 적발된 응급진료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
- 점검결과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(별지 제3호서식) 및 휴일지킴이약국 점검결과(별지 제4호서식)를 2017.10.12.(목)까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통보
- ※ 보건복지부에서 의협·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불이행 기관 통보 예정

## [4] 시·군·구

### ① 보건소·보건의료원

#### ○ 관내 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·시행

- 시·군·구청장은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로부터 통보받은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조정하여 지정하고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
-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·군·구와 협의를 거쳐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
- 휴일지킴이약국은 가급적 인근 당직의료기관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조정하고,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
- 시·군·구청장은 시·도지사가 추가 별도 지정한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지정된 사항을 보고

#### ○ 연휴기간 응급진료계획과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을 취합하여 시스템에 입력 완료 후 시·도에 보고

- 시·군·구(보건소) 담당자 :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·등록

※ 시스템 문의 : 중앙응급의료센터(02-6362-3434 또는 3456)

#### ○ 보건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확보

- 시·군·구청장은 명절 연휴기간 자체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명절 당일 등 취약기간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확보

※ 연휴기간 중 주간(09:00 ~ 18:00)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(연장가능), 야간에는 당직근무체계를 통한 응급진료 가능하도록 유지

※ 별첨의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및 운영지침 참고

#### ○ 연휴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홍보

-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
- 보건복지콜센터(129), 구급상황관리센터(119), 시도콜센터(120),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(www.e-gen.or.kr) 이용하여 관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
- 기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강화

#### ○ 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

- 운영기간 : 2017. 9. 30.(금) ~ 10. 9.(월), 09:00~18:00

※ 18시 이후부터는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
#### ○ 관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현황 유선 점검 및 방문 확인

- 관내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여부를 유선 점검 실시하고,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병행 실시
- 야간에는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·감독

※ 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「의료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반드시 응급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

### ② 보건지소·보건진료소

#### ○ 필요시 보건지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

- 진료를 실시할 경우 해당사항을 사전에 적극 홍보

## [5] 응급의료기관 등

### ① 권역응급의료센터

-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
  - 재난의료지원팀(DMAT)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
  -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구급차 출동대세 확립
  -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
-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
  -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 실시

### ② 응급의료기관(전문·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, 응급의료시설 및 종합병원

-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
  -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 실시
  -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 지정·운영하여 비상진료체계 구축
  - 구급차 출동 준비
-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외래 진료개설
  -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외래 진료 개설

## [6] 당직의료기관

### □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

- 지역주민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 운영
-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

- 시·도, 시·군·구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직의료기관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

### □ 휴무 의료기관은 인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

- 휴무기간, 인근 당직의료기관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

## [7] 휴일지킴이약국

### □ 휴일지킴이약국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

-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
-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
- 시·도, 시·군·구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

### □ 휴무 약국은 인근 휴일지킴이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

- 휴무기간, 인근 휴일지킴이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

【붙임3】

##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 지침

### (1) 개요

#### □ 목적

-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
-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있어 국민 불편 최소화와 적정 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

#### □ 근거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

#### □ 기본방향

- 명절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최소의 당직의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·운영
- 일차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
- 당직의료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동시 지정·운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

### (2) 당직의료기관 지정

#### □ 지정권자 :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
  - ※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
  -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내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
  -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·군·구에 해당하는 경우
  -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
  - 시·군·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
  -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·도에 해당하는 경우
  -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
  - 시·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지정기준

- 특별시·광역시 지역 : 시·군·구의 인구 2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
  - \*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
- 도 지역 : 시·군·구의 인구 1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
  - \*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
- 의료취약지역의 대책
  - 전문과목의 중복 : 1개소의 병·의원이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지정
  -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용 : 관내의 보건의료원,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지정
  - 공동지정 : 시·도지사의 조정하에 인접 시·군·구와 진료권을 통합하여 지정

□ 지정대상 및 진료과목

- 지정범위 :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·의원 중에서 지정
- 기본과목 :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상병을 진료 가능한 다음의 진료과목을 계열별로 지정

계열	진료과목
내과계	내과, 가정의학과, 이비인후과 등
소아과계	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, 내과, 이비인후과 등
외과계	외과, 정형외과, 가정의학과, 흉부외과, 마취통증의학과 등

- 선택과목 : 질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적으로 지정
  - 진료과목 :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피부과

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절차

-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
  - 시·도별 당직의료기관의 지정·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
  - 시·군·구별 당직의료기관의 지정·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
- 관련기관 협조 및 직접지정
  - 관내의 의료인단체 또는 개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료기관을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
  -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의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
- 지정사실 통보
  -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휴 1주일 전에 통보·고지
  - 통보내용 :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사실, 지정일시, 지정의 취지 및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

**[3] 휴일지킴이약국 지정**

□ 기본방향

-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

□ 지정기준

- 시·군·구의 인구 2만명 당 최소 1개소 지정

□ 지정대상 및 절차

- 당직의료기관 지정 지침을 준용

#### (4) 지도·감독

##### □ 진료 및 운영 여부의 확인

-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해당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운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

#### (5) 안내 및 홍보

##### □ 사전 홍보

-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지정·운영현황을 지역신문,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공지

##### □ 실시간 홍보

-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([www.e-gen.or.kr](http://www.e-gen.or.kr))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(응급의료 정보제공)을 이용하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실시간 안내  
- 기관명, 전화번호, 주소, 일자별, 시간대별 운영현황